청년구직활동지원금 FAQ

- Ⅰ. 신청편 -

※ 본 자료는 2019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과 관련한
주요 문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입니다.

2019. 3.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 신청 관련 >

1.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하고 어디로 신청하나요?

답)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안 되고, 첨부 서류도 모두 온라인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2. 고용센터 방문은 안 해도 되는 건가요?

답)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 방문은 안 해도 되나, 선정된 이후 예비교육(2~3시간 소요)을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합니다. 신청 시 예비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고용센터를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 변경 불가하므로 유의바랍니다.

3. 거주하고 있는 지역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답) 주민등록상 주소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된 이후 예비교육(2~3시간 소요)을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고용센터를 선택할 때, 거주지 인근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접수하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며,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답) 대표적으로 졸업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학교·대학원 졸업증명서는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담당자가 직접 확인 예정)

가족관계증명서는 [붙임1]의 내용을 참고하여 부모님 또는 배우자의 상태에 따라 증빙 서류를 달리 제출하며, 대법원 사이트(efamily.scourt.go.kr)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자격요건 관련 >

5. '17년 2월 졸업생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사업 시작 시점이 3월 말인 점을 감안하여, '19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졸업 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년 4월까지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대학원 수료생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수료·졸업유예·졸업예정 등의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7.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학생(휴학생 포함)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졸업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8. 학점인정제를 통해 졸업을 했습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답) **학점인정제 졸업도 졸업으로 인정**하므로, 졸업 2년이 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회사에 다녔었고, 현재 이직을 준비 중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답)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무관하게**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10. 현재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근로계약서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으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합니다.

11.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은 부·모·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희망 시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536,244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78,821원)
*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512,039원 (가구 보험료 부과액 145,739원)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확인 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고용센터 산정 건강보험료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므로 유의 바랍니다.

12. 부모님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형제·자매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답) **가구원에 부·모·본인이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을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 화면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제공동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에 서명 후 신분증과 함께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등)가 있는 경우, [붙임 1]의 서류를 확인하고 '소득산정대상 제외요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제외요청 시에도 모두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담당자가 확인 과정에서 추가로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나, 동의를 받을 경우 담당자가 형제·자매의 소득까지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가구소득을 산정할 것입니다.

형제·자매가 학생이거나, 별도 소득이 없는 경우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 기준 모두 올라감)

반대로 형제·자매가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소득이 있거나, 결혼하여 다른 가구를 구성한 경우는 개인정보제공동의를 받는다고 해도 소득산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가구원 수 및 가구소득에서 해당 형제·자매 제외)

13. 부모님과 독립하여 혼자 살고 있는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답) 독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부·모·본인은 소득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부·모와 경제적인 단절을 입증할 경우, 1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될 수도 있으며, 상세 증빙자료는 [붙임1]을 참고 바랍니다.

14.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촉진수당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재참여 제한기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있으면 후순위로 지원되므로 유의바랍니다.

15. 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수당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없나요?

답) 자치단체 유사사업은 [붙임2] 목록에서 확인하시면 되며, 목록에 있는 수당을 지원받으셨을 경우,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재참여 제한기간)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사업 참여경험이 있으면 후순위로 지원되므로 유의바랍니다.

또한, [붙임2] 목록에 있는 사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동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하면 안 됩니다. 추후 적발 시 부정수급액의 최대 1배까지 추가로 반환해야 합니다.

16.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 중입니다. 신청할 수 없나요?

답) 훈련에 참여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일배움카드와 국가기술 전략산업 관련 훈련의 경우 후순위로 지원될 수 있으며, 특히 '18년 이전 국가기술 전략산업 관련 훈련을 수강한 경우 종료한 이후에도 후순위로 지원됩니다.

17. 구직활동 계획서에 작성해야 하는 구직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 **입사원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에 응하는 등과 같은 '직접 구직활동'**부터 **훈련, 학원수강, 상담, 컨설팅, 스터디 등과 같은 '간접 구직활동'**까지 모두 인정합니다. 다만, 구직활동계획서에 작성한 내용이 구직활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모호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직활동 관련성을 판단한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선정 관련 >

18. 신청하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 **예산 상 한계 때문에 매월 접수된 신청자 중 졸업·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19년 총 8만명 지원)

또한, 선정되더라도 예비교육(고용센터, 1회), 매월 구직활동보고서 제출, 취업 동영상 수강 등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9. 선정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 **신청한 다음 달 15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 선정되면 바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선정된 이후에는 예비교육(2~3시간 소요)을 위해 고용센터에 1회 방문해야 하며**, 예비교육에 참석한 자에 한해 그 다음달 1일 카드에 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예: 4.1~30 신청 → 5.1~5.15 심사, 5.16~5.31 예비교육(3시간 이내 참석) → 6.1 첫 포인트 지급

붙임 1 가족관계증명 관련 제출서류

구분	결혼 여부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필수 서류	미혼	생존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주1]		
		생존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생존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		
		생존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 등 서류[주2]		
		생존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이혼 후 관계단절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이혼 후 관계단절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이혼 후 관계단절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등본[주4]+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주민등록초본[주7]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실종 등 서류[주2]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이혼 후 관계단절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사망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사망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폐쇄인정[주5]
		사망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사망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사망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재외국민 •외국인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외국인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주민등록초본[주7]	
		재외국민 •외국인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폐쇄인정[주5]

구분	결혼 여부	부	모	제출서류	추가서류	비고
		재외국민 •외국인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실종 등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이혼 후 관계단절	가족관계증명서(부+모)+실종 등 서류주2)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주민등록초본주7)	
		실종 등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모) +실종 등 서류주2)		폐쇄인정주5)
		실종 등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실종 등 서류주2)		
		실종 등	재외국민 •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부) +실종 등 서류주2)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기혼	배우자 생존		가족관계증명서(본인)주1)		
		배우자와 이혼 후 관계단절		혼인관계증명서(본인) +주민등록등본주4)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주6)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본인) +혼인관계증명서(본인)주8)		
		배우자 실종 등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실종 등 서류주2)		
		배우자가 재외국민•외국인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주3)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민원24(minwon.go.kr), 대법원 (efamily.scourt.go.kr)

※ '07.12.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전호주와의 관계' 및 '호주승계사유'를 통해 가구원 사망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사망 인정)

주1)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주2) 실종 등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군복무확인서(군부대),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

주3)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① 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 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 포함))

주4) 주민등록등본: '본인 단독세대주'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 여부 확인필요

주5)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주6)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부모 모두로부터 경제적 단절을 주장하는 경우, 본인을 포함한 해당 건강보험가입자가 모두 표시된 서류 접수·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무료발급)

주7)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주8)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

붙임 2 자치단체 유사사업 현황('19.3월 기준)

연번	자치단체	사업명	'18년 현황	'19년 계획
1	**서울** ('17.6월)	청년활동 지원사업	만 19~29세/150%이하 50만원x6개월/7,0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9~34세/ 150%이하/50만원x6개월/5,000명
2	**경기** ('17.6월)	청년구직 지원금	만 18~34세/150% 이하 50만원x6개월/2,300명	청년기본소득 도입에 따라 폐지
		청년기본소득	-	만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17만명
3	경기 성남 ('17.8월)	청년배당	만 24세 청년,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 지원/00명	경기도 청년배당으로 통합
4	**대전** ('17.6월)	청년취업 희망카드	만 18~34세/150% 이하 30만원x6개월/5,0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이하/50만원x6개월/2,500명
5	**부산** ('17.9월)	청년구직 활동비	만 18~34세/80%이하 1인당 240만원/2,263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20% 이하/1인당 300만원/600명
6	**강원** ('17.6월)	구직활동수당	만 15~34세/30만원x3개월 /14,916명(**'17년기준, '18년부터 폐지**)	폐지
7	**광주** ('18.4월)	광주청년 드림수당	만 19~34세/120%이하 40만원x6개월/1,100명	잠정 중단
8	전북 전주 ('17.11월)	청년쉼표! 프로젝트	만 19~34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50만원x3개월/100명	만 19~34세/기준중위소득 150% 이하/50만원x3개월/200명
9	경남 창원 ('18.1월)	청년 구직수당	만 19~34세/100% 이하(상반기), 150% 이하(하반기) 30만원x4개월/2,000명	기존 사업 폐지 (경남으로 통합)
10	**제주** ('18.8월)	청년자기 개발금지원	만 19~34세/150% 미만 40만원x4개월/300명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20% 이하/1인당 300만원/330명
11	전남 해남 ('18.11월)	두드림 청년취업지원	만 18~39세/기준중위소득 120% 이하/30만원X6개월, 60명	기존 사업 폐지 (전남으로 통합)
12	**전남** ('19년)	청년 구직지원수당	-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미만/50만원x6개월/500명
13	전남 영광 ('19년)	청년취업 활동수당		졸업 후 2년 이상/만 19~45세/ 150%미만/50만원x6개월/200명
14	**경남** ('19년)	청년 구직활동수당	-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이하 50만원x4개월/4,000명
15	**대구** ('19년)	대구형 청년수당	-	상담연결(1,000명, 30만원x1회) 진로탐색(300명, 50만원x3개월) 일경험(125명, 50만원x4개월)
16	**울산** ('19년)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4세/ 150%이하/30만원x6개월/160명
17	**인천** ('19년)	드림 체크카드	-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9세/ 150%미만/50만원x6개월/250명
18	인천 연수구 ('19년)	청년쉼표! 프로젝트		만 18~34세/기준중위소득 100% 이하/50만원x3개월/30명
19	전북 익산 ('19년)	청년취업드 림카드	-	졸업 후 2년 이상/만 18~39세/ 100%미만/30만원x6개월/500명

* 위 내용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